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기업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이하 기업도시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입주기업 유치계획 등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안 별표1)
- 나. 기업도시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고, 시행자의 보고의무 추가 (안 제3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완화 (안 제9조 및 제16조)
- 마. 기업도시법 제6조제2항제3호 삭제로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위임조항 삭제(안 제9조의2)

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요건 정비(안 제15조)

사.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44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100만제곱미터”를 “5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 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증감”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 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감소”를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 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증감”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10퍼

센트”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측량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의 정정

8.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제5항”을 “법 제11조제7항”으로, “100만제곱미터”를 “50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1조제7항”을 “법 제11조제8항”으로, “30퍼센트(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 1명

나.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 등 심의 안전을 관할하는 시·도: 1명

다. 국토교통부 : 1명

2. 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명

3. 법 제3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각 목별 2명

4. 법 제39조의2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3명

②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제1항, 제2항, 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개최 방법, 회의출석 및 안건의 상정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별표 1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입주기업 유치계획(입주 희망 기업 수요, 특성, 유치 방안 등)

30. 이외의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 또는 동의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조제3항 관련)

1. 사업의 범위와 규모(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개발방식 등)
2. 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
4. 개발계획의 변경
5. 시행자의 기업이전 및 사업장 등 설치계획
6.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협력에 관한 사항
7. 개발완료 시의 시설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9.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10.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1. 공공시설 등의 설치
12. 조성공사의 착공시기
13. 조성공사의 관리와 감독
14. 조성토지의 직접 사용내역
15.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6. 주택의 건설과 공급
17. 공공시설의 사후 관리
18.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토지수용, 국고지원, 지방재정지원, 국유지·공유지
무상임대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말한다)
19. 전담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20. 개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구성

- 22. 토지 직접사용 시기 및 의무 사용기간
- 23.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설치 시기와 주체
- 2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25.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 26. 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및 설치시기
- 27.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28. 투자지원 시의 대책
- 29. 입주기업 유치계획(입주 희망 기업 수요, 특성, 유치 방안 등)
- 30. 이외의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 또는 동의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 ----- ----- ----- ----- ----- <u>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 ----- ----- ----- ----- ----- -----.
1. <u>개발구역 면적의 축소</u>	<u><삭 제></u>
2. <u>개발구역 면적의 10 퍼센트 범위안에서의 확대</u>	<u><삭 제></u>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 5. (생략)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 법 제5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5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공청회) -----
법 제5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5
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

-- 50만제곱미터-----.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 구역의 최소면적은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축소기준 및 요건) ①·② (생략)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하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업의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사무소를 말한다.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축소기준 및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u>10 퍼센트</u>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u>증감</u> 2. 사업면적의 <u>10 퍼센트</u>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u>감소</u> 3.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u>10 퍼센트</u> 범위 안에서의 <u>증감</u> 4. 5. (생략) 6.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u>10 퍼센트</u>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7.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8.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9. (생략)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생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u>법 제11조</u>	-----. -----. 1. ----- <u>100분의 10</u> ----- ----- 변경 2. ----- <u>100분의 10</u> ----- ----- 변경 3. ----- ----- <u>100분의 10</u> ----- 변경 4. 5. (현행과 같음) 6. ----- <u>100분의 10</u>----- 7. 측량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의 정정 8.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u>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9. (현행과 같음)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1조제</u>
--	---

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③법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
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
획기준에는 도로·공원 등 공공
·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30퍼센트(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4
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기업도
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6항 -----

-----.

1. ~ 8. (현행과 같음)

③법 제11조제7항 -----

----- 50만제곱미터-----
-----.

⑤법 제11조제8항-----

----- 100분의 30 -----

-----.

제4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 1명
나.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

도시 등 심의 안건을 관할

하는 시·도: 1명

다. 국토교통부 : 1명

2. 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명

3. 법 제3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각 목별

2명

4. 법 제39조의2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3명

②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위

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③제1항, 제2항 및 법 제39조의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개

최 방법, 회의출석 및 안건의 상

정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따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98